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 1/2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서류제출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 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기한 : 2024.12.01(일)~12.05(목)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는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장시간 : 10:00 ~ 17:00 (17:00 입장마감)
- 제출방법 :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 주택전시관 방문 제출
- 제출장소 :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 주택전시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126)
-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7)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서약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 본인발급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 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기간 확인 / 성명,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문서 제출가능) -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소득증명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명서류 포함)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주민등록표 등본 (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본인의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전시관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본인 또는 세대원 전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부동산 소유 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발급 시 주민번호 공개에 체크 ※ 주택전시관에서 출력한 문서에 한해서 인정 가능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행정 복자센터, 위택스(비회원 로그인 출력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또는 자녀	· 당첨자의 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현재 배우자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 (상세)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 - 출산예정일, 질령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주택전시관 비치)
무주택 증빙서류	세대원 전원	· 소형-저가주택 등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당첨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본인발급용
위임장	당첨자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주택전시관 비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을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당첨유형별로 서류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본인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관련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전시관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 2/2

■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해당기관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 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증명서(원본 : 직인 날인)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②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표시해야 하며 휴직유형 명시 - 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직장 / 세무서(홈택스) ② 해당직장
근로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원본 : 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원본 : 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① 해당직장 / 세무서(홈택스)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 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해당직장 / 세무서(홈택스)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재직증명서(원본 : 직인 날인) ③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세무서(홈택스) ②③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①② 세무서(홈택스)
자영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2024.11.07. 이전 가입자에 한함 (국민연금 미가입자) 공고일 이전 가장 가까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홈택스) ②③ 세무서(홈택스)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①② 해당직장 / 세무서(홈택스) ③ 세무서(홈택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① 세무서(홈택스) ② 해당직장 / 세무서(홈택스) ③ 해당직장
기타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원본)	① 행정복지센터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① 세무서(홈택스) / 해당직장
무직자	①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② 비사업자 확인 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① 세무서(홈택스) ② 주택전시관

■ 자산입증서류안내

서류구분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주택전시관에서 출력한 문서에 한해서 인정 가능함 ※ 부동산 소유현황 검색을 위한 세대원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수 지참 해야함 ② 재산세 납부현황(부동산 소유자) ③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 24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위택스(www.wetax.go.kr)
추가(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용(www.eum.go.kr)
필수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주택전시관에서 출력한 문서에 한해서 인정 가능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 / 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통합발급,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위택스(www.wetax.go.kr) ※ 위택스 비회원 로그인 출력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 1/2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서류제출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 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기한 : 2024.12.01(일)~12.05(목)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는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찰시간 : 10:00 ~ 17:00 (17:00 입장마감)
- 제출방법 :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 주택전시관 방문 제출
- 제출장소 :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 주택전시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126)
-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7)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서약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 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여부 확인 / 성명 및 주민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문서 제출가능) -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소득증빙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포함)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본인의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전시관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본인 또는 세대원 전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부동산 소유 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발급 시 주민번호 공개에 체크 ※ 주택전시관에서 출력한 문서에 한해서 인정 가능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행정 복지센터, 위택스(비회원 로그인 출력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뢰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 - 출산예정일, 질령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뢰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뢰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주택전시관 비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본인발급용
위임장	당첨자	• 주택전시관 비치(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을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유형별로 서류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본인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의근무자(단신부임) 관련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전시관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 2/2

■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해당기관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 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증명서(원본 : 직인 날인))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②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표시해야 하며 휴직유형 명시 - 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직장 / 세무서(홈택스) ② 해당직장
근로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원본 : 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원본 : 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① 해당직장 / 세무서(홈택스)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 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근무자별 소득명세표상 "주(원)"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해당직장 / 세무서(홈택스)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재직증명서(원본 : 직인 날인) ③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세무서(홈택스) ②③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①② 세무서(홈택스)
자영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확인서 ※ 2024.11.07. 이전 가입자에 한함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국민연금 미가입자) 공고일 이전 가장 가까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홈택스) ②③ 세무서(홈택스)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③ 사업자등록증(사본)	①② 해당직장 / 세무서(홈택스) ③ 세무서(홈택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① 세무서(홈택스) ② 해당직장 / 세무서(홈택스) ③ 해당직장
기타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원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① 행정복지센터 ② 세무서(홈택스) / 해당직장
무직자	①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② 비사업자 확인 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① 세무서(홈택스) ② 주택전시관

■ 자산입증서류안내

서류구분	중빙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주택전시관에서 출력한 문서에 한해서 인정 가능함 ※ 부동산 소유현황 검색을 위한 세대원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수 지참 해야함 ② 재산세 납부현황(부동산 소유자) ③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 24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① 공동(개발)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위택스(www.wetax.go.kr)
추가(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용(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주택전시관에서 출력한 문서에 한해서 인정 가능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 / 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통합발급,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위택스(www.wetax.go.kr) ※ 위택스 비회원 로그인 출력 가능

■ 소득세 납부입증 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중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홈택스)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소득금액증명	①② 세무서(홈택스)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홈택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②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 날인), 소득금액증명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④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인, 프리랜서 등) :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0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음을 확인	①② 해당직장 / 세무서(홈택스) ③ 세무서(홈택스) ④ 해당직장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천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서류제출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 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기한 : 2024.12.01(일)~12.05(목)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는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장시간 : 10:00 ~ 17:00 (17:00 입장마감)
- 제출방법 :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 주택전시관 방문 제출
- 제출장소 :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 주택전시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126)
-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7)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서약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필수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 본인발급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추가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상세)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본인의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무주택 증빙서류	• 소형·저가주택 등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본인발급용
	위임장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주택전시관 비치)
	신분증, 인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을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유형별로 서류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본인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서류제출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 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기한 : 2024.12.01(일)~12.05(목)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는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장시간 : 10:00 ~ 17:00 (17:00 입장마감)
- 제출방법 :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 주택전시관 방문 제출
- 제출장소 :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 주택전시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126)
-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7)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주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서약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필수 서류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 본인발급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
주민등록표 등본 (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 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상세)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본인의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주민등록표 초본 (상세)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 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번호 (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추가 서류	본인	• 만 19세 미만인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성명,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만 19세 이하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번호 (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 (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 -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주택전시관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무주택 증명서류	본인	• 소형-저가주택 등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당첨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본인발급용
위임장	당첨자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주택전시관 비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주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을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당첨유형별로 서류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본인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관련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전시관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서류제출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 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기한 : 2024.12.01(일)~12.05(목)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는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장시간 : 10:00 ~ 17:00 (17:00 입장마감)
- 제출방법 :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 주택전시관 방문 제출
- 제출장소 :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 주택전시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126)
-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7)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서약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가점 산정기준표(가점제, 노부모 부양)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필수 서류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 본인발급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 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사실 확인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추가 서류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미혼 또는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발급)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	피부양 직계비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상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본인의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 과거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비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번호 전체 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무주택 증빙서류	본인	• 소형-저가주택 등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당첨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본인발급용
대리인	당첨자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주택전시관 비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을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유형별로 서류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본인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관련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전시관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